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83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황정아·장종태·박용갑  
김우영·임미애·장철민  
민홍철·진성준·황명선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공공기술 이전 또는 이를 활용한 창업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32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